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120
----------	-------

제출년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5조)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정조례안 : 붙임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23. 1. 26. ~ 2023. 2. 15.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4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 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 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 ·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120호
----------	---------

제안년월일 : 2023. 3. 2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불필요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 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 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4. (생 략)</p>	<p>제2조(정의) -----.</p> <p>1. (원안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2. (원안 제4호와 같음)</p>